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12. 24.
행정 위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12월 18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12월 18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8회(정기회) 제12차 위원회 (1999년 12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 가. 제정이유
 -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 회, 방위지원본부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통합방위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기 능(안 제2조)
 - 지역통합방위대비책
 - 통합방위작전·훈련시 지원대책
 -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 2) 구 성(안 제3조)
 - 위원 : 50인 이내
 - 의장(구청장), 부의장(부구청장, 위촉직 중 1인)
- 3) 회의개최(안 제8조)
 - 정기회 : 분기마다 1회 소집
 - 임시회 : 의장 필요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송성만)

동 조례안은 통합방위법('97. 1. 13.) 및 동법 시행령('99. 3. 1.)의 제정 시행에 따라 우리 구의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2조에서는 통합방위대책에 대한 지원 및 효율적인 육성 지원대책 등을 심의 조정하고, 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시 의장은 구청장으로 위원의 구성을 명시하고, 제6조에서는 필요시 실무위원을 두며, 제10조에서는 방위지원본부의 조직·운영사항과 제11조에서는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내용이 며, 제12조에서는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는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통 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 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07
----------	-----

제출년월일 : 1999. 12. 1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 방위지원본부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통합방위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기 능(안 제2조)
 - 지역통합방위대비책
 - 통합방위작전·훈련시 지원대책
 -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 나. 구 성(안 제3조)
 - 위원 : 50인 이내
 - 의장(구청장), 부의장(부구청장, 위촉직 중 1인)
- 다. 회의개최(안 제8조)
 - 정기회 : 분기마다 1회 소집
 - 임시회 : 의장 필요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 나. 예 산 조 치 : 해당 없음
- 다. 합 의 사 항 : 합의되었음
- 라.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 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 다. 취약지역 대비책
- 라. 통제구역 설정
-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 고문을 포함한 50이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영등포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영등포구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의장이 선임하는 1인으로 하고, 상임고문 1인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 1. 영등포구의회의 의장
- 2.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
- 3.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
- 4. 영등포경찰서장
- 5. 육군 제52사단 213연대장
- 6. 국가정보원 영등포구 연락관
- 7. 영등포소방서장
- 8. 용등포세무서장
- 9. 동작세무서장
- 10. 여의도우체국장
- 11. 영등포우체국장
- 12. 영등포구 보건소장
- 13. 여의도전화국장
- 14. 영등포전화국장
- 15. 재향군인회 영등포지회장
- 16. 자유총연맹 영등포지회장
- 17. 한국전력공사 영등포지점장
- 18. 농협중앙회 영등포지점장
- 19.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④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의장이 위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장을 간사로 하고, 총무과장을 서기로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당연직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하며, 동도 이하 같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

제10조(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청장과 동장 소속 하에 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주무담당주사가 된다.

②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로 구성하되, 구 상황실은 지하종합상황실에, 분야별 지원반은 각 부서 또는 기관에 설치 운영하며, 동은 동사무소 내에 설치 운용한다.

③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구는 별표1, 동은 별표2와 같다.

④기타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지원본부 내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법 제9조제1항의 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구 군·경정보합동상황실은 영등포구청 내에 두고, 동 군·경정보합동상황실은 동 실정에 맞게 동 방위지원본부장이 설치한다.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2. 주민신고망의 조직·운영
3.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4.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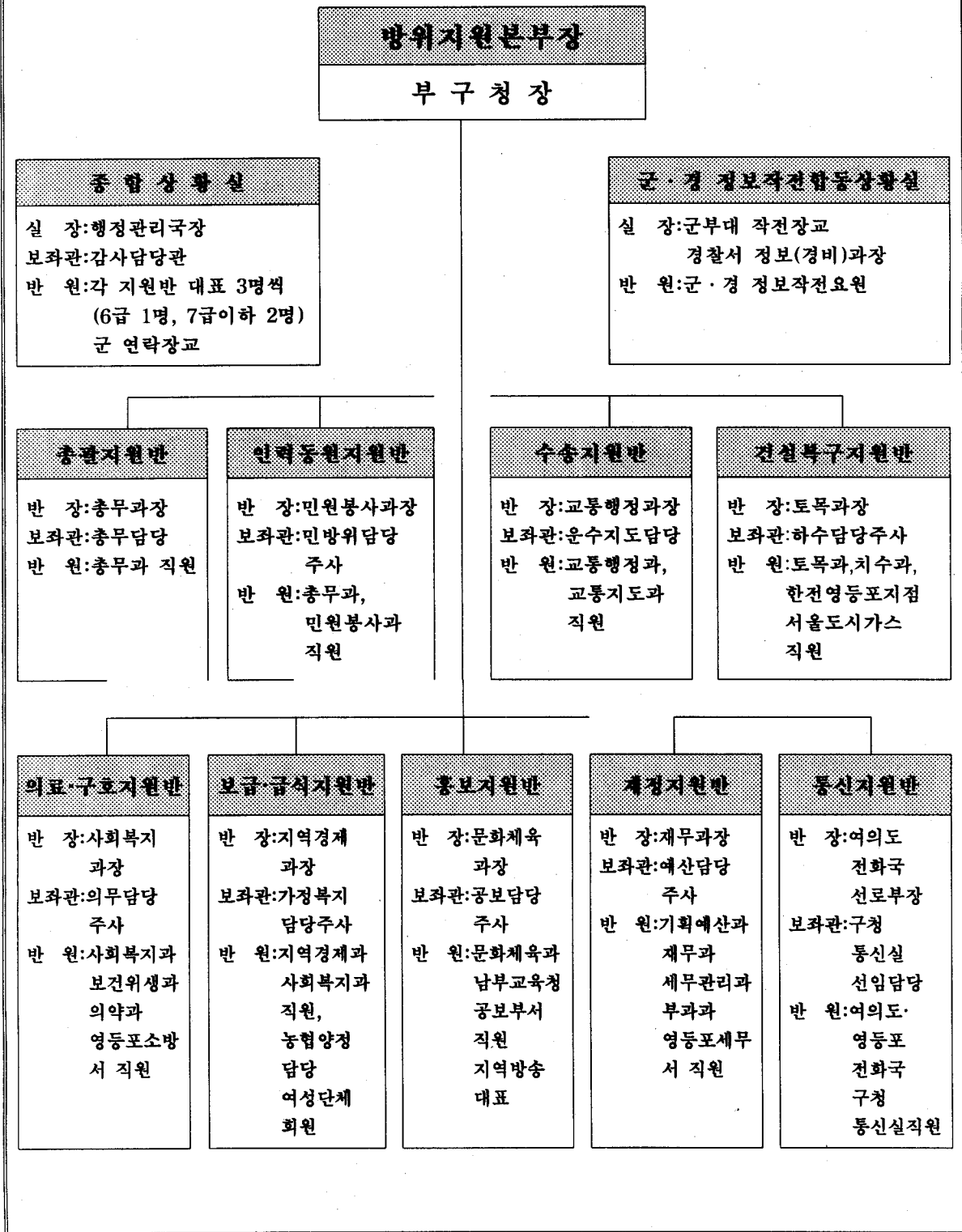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본 조례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1]

구 방위지원본부 구성



[별표2]

동 방위지원본부 구성

